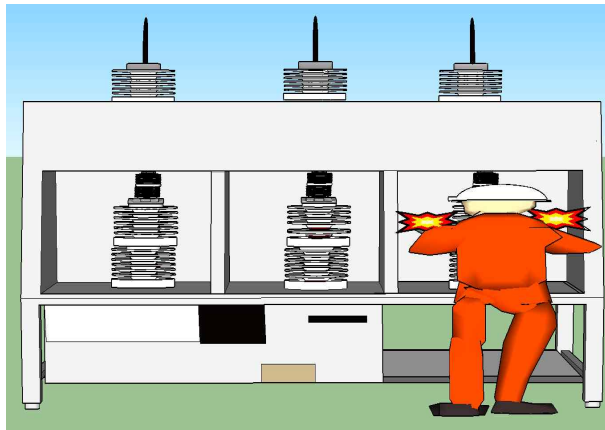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.1.3(목) 경기 안산시 소재 ○○○○공사 ○○변전소 내에서 (주)○○소속 작업자가 변전설비(조상설비*)의 고장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중 진공차단기 (VCB) 상부 충전부 접촉(감전)으로 사망한 재해임

※ 조상설비 : 변전시 전력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압조정 또는 역률개선 등을 하는 설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전기작업 시작 전 해당 전로 차단 및 전로 차단 절차 미준수
 -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정비 또는 점검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(휴전상태) 후 작업 실시를 하여야 하나 통전상태에서 차단기 외함 문짝을 개방하여 충전부에 접촉함
 - 정전작업 시 작업 전 애자의 충전여부에 대해 검전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확인 없이 접촉함
- 보호구 착용 미흡
 -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 또는 점검 시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해야 함에도 해당 작업에 부적절한 일반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재해 발생



재해 예방 대책

- 전기작업 시작 전 해당 전로 차단 및 전로 차단 절차 준수
 -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정비 또는 점검 시에는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 후 작업 실시 및 전로 차단 시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수행
- 보호구 착용 철저
 - 특고압의 충전전로 작업 또는 점검 시에는 근로자에게 특고압용 절연장갑 등 적절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근로자의 감전재해 예방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